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0. 2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규칙명 :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안이유

- 집행기관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대집행기관 질문(군정질문)의 방식, 발언시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,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군정질문 방식에 관한 사항(안 제66조의2제2항)

- 본질문 : 일괄질문 · 일괄답변
- 보충질문 : 1문 1답(본질문한 의원이 본질문 범위에서 가능)

나. 군정질문 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66조의2제3항)

- 본질문 :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초과 불가
- 보충질문 :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초과 불가

다. 군정질문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66조의2제4항)

- 의장은 질문 요지서를 군정질문 120시간 전까지 군수에서 송부해야 하고, 군수는 답변 요지서를 군정질문 48시간 전까지 의장에서 제출해야 함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0. 2. ~ 10. 10.(8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규칙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규칙안	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2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정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한다.

제66조의2제2항 후단 중 “**의원이 원할경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**”을 “**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이 의장**”으로, “**본 질문**”을 “**본질문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군정질문의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 20분,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시간을 10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정 질문 요지서를 미리 접수하여 질문 내용이 의원 간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, 군정질문 120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군정질문 48시간 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의2(군정에 관한 질문) ① (생략) ② <u>군정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 다만 의원이 원할 경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 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질 문한다.</u> ③ <u>군정질문을 할 때에의 발언 시간은 제33조를 준용한다.</u> ④ <u>의장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질문요지서(별지 제1호서식)를 미리 접수하여 질 문내용이 질문의원간에 상호 중 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한 후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야 한다.</u>	제66조의2(군정에 관한 질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군정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 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한다. 다 만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한다.</u> ③ <u>군정질문의 의원별 질문시간 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 20분,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시간을 10 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</u> ④ <u>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정 질문 요지서를 미리 접수하 여 질문내용이 의원 간 상호 중 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, 늦어 도 군정질문 120시간 전까지 군 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군정질문 48시간 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 요지서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⑤ (생 략)

⑤ (현행과 같음)